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3. 7.

하동군의회의회장 강대선

1. **조례명:**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조례상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를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

-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따른 처리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나.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안 제18조)

- 처리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다. 과태료 부과기준 미비점 보완(별표)

- 선서와 서류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1) 팩스: 055-880-2939

-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 3) e-mail: jina927@korea.kr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동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범위에서”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 ①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제3조제1항 중 “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를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조사한”을 “조사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4조 중 “한다) 이”를 “한다)이”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이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를 “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5조제2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7조 중 “이의 검토”를 “이를 검토한”으로, “연장 또는”을 “늘리거나”로 한다.

제8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감사위원회”를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도달 되도록 하여야”를 “도달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 사람과”를

“않은 경우와”로, “아니하거”를 “않거”로, “사람에게는 법 제41조제5항”을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의장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를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증인등””을 ““증인 등””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4항”을 “제9조제1항”으로, “증인등”을 “증인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하동군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인으로서”를 “증인 등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증인에게는 비용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를 “증인 등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3항의”를 “법 제49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를 “않도록 주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알게된”을 “알게 된”으로,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처리하고”를 “처리하고,”로, “의회에 보고하여야”를 “시정 요구 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로 한다.

제19조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한다.

제20조 중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중 “(단위 : 만원)”을 “(단위: 만원)”으로 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비 고
○ 출석요구 불응	1회	100~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출석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 증언(진술)거부 1회는 1일 중의 증언(진술)거부를 말한다.
	2회	200~300	
	3회 이상	300~500	
○ 선서 거부		증언(진술) 전체 거부와 동일	
○ 증언(진술) 전체 거부	1회	100	
	2회	200	
	3회 이상	300	
○ 증언(진술) 일부 거부	1회	50	
	2회	100	

	3회 이상	150	
○ 서류제출 거부		출석요구 불응과 동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감사) ① 의회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p> <p>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조하여 작성하고 본회의</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하동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 ----- ----- ----- ----- ----- ----- -----</p> <p>제2조(감사) ①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p> <p>② ----- ----- <u>이내의 범</u> <u>위에서</u> ----- ----- <u>의회운영위원</u> <u>회</u>-----</p>

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한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

-----.

③ -----

---- 기재해야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통지해야 -----.

제3조(조사) ① -----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② -----

-----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해야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조사할 -----

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생략)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4. (생략)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

----.

⑥ (현행과 같음)

⑦ -----

----- 통지해야 -----.

제4조(사무보조자) -----
----- 한다)이 -----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3.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
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사람에게
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장의
통지 등으로 군수가 별표의 기
준에 의해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과태료 부과절차는
법 제27조에 따른다. 다만 처리
결과에 대해 군수는 의장이 통
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선서의 방식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
려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
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
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

----- 않은 경우와 -----
----- 않거-----
-----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
과를 의장이 통지한 날부터 2개
월 이내에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선서의 방식 등) ① -----

----- 해야 -----

-----.

② -----
-----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
명날인하게 해야 -----
----- 다만-----

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지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방송·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 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1.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송료(철도, 항공, 선박 및 자

-----.

③ ----- 해야

-----.

제12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 “증인 등”-----
----- 않는다-----

----- 않을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1항-----

----- 증인 등-----

-----.

1. -----

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와 일비로 하고 비용을 지급에 관하여는 「하동군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의 제2호를 준용한다.

2. (생략)

3.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4. 하동군의회 의원,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및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3항의 따라 국가사무와 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

2. (현행과 같음)

3. -----

----- 증인
등으로서 -----
-----.

4. -----

----- 증인 등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5. -----

----- 않을 -----
-----.

제13조(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

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제척과 회피) ① (생략)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6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방해

-----.

② 법 제49조제3항 -----

-----.

제14조(공개의 원칙) -----
-----.

----- 않을 -----
-----.

제15조(제척과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야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주의의무) ① -----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
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
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
고) ① 본회의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한 때에는 의원 중에
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감사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
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
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
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
한 처리) ①·② (생략)

③ 군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
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
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

----- 않도록
주의해야 -----.

② -----
----- 알게된 --

--- 안 ----.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
고) ① -----

----- 보고
해야 -----.

② -----

----- 첨부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
한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처리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제1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5조에 따른 제
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
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
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
례」와 「하동군의회 회의 규
칙」을 준용한다.

하고, ----- 시정 요구 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의회에 보고해야 ---.

제19조(징계) -----

----- 않거나-----

-----.

제20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

-----.